

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, 9일 국무회의 의결

-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,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은 「교통안전법」 개정(‘23.8.16. 공포, ’24.8.17. 시행 및 2024. 1. 23. 공포, 7. 24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.
 - 먼저,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.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* 내 도로를 「교통안전법」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·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.
 - * 대학교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, 기술대학 등
 -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·관리,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.
 -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.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관할 시·군·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- 또한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*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다.

* 5년마다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수립

- 시·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(2개 이상)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(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),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“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,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

- “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	책임자	과 장	한동훈	(044-201-3230)
	교통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남철	(044-201-3868)
			사무관	최혜리	(044-201-386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 1

단지 내 도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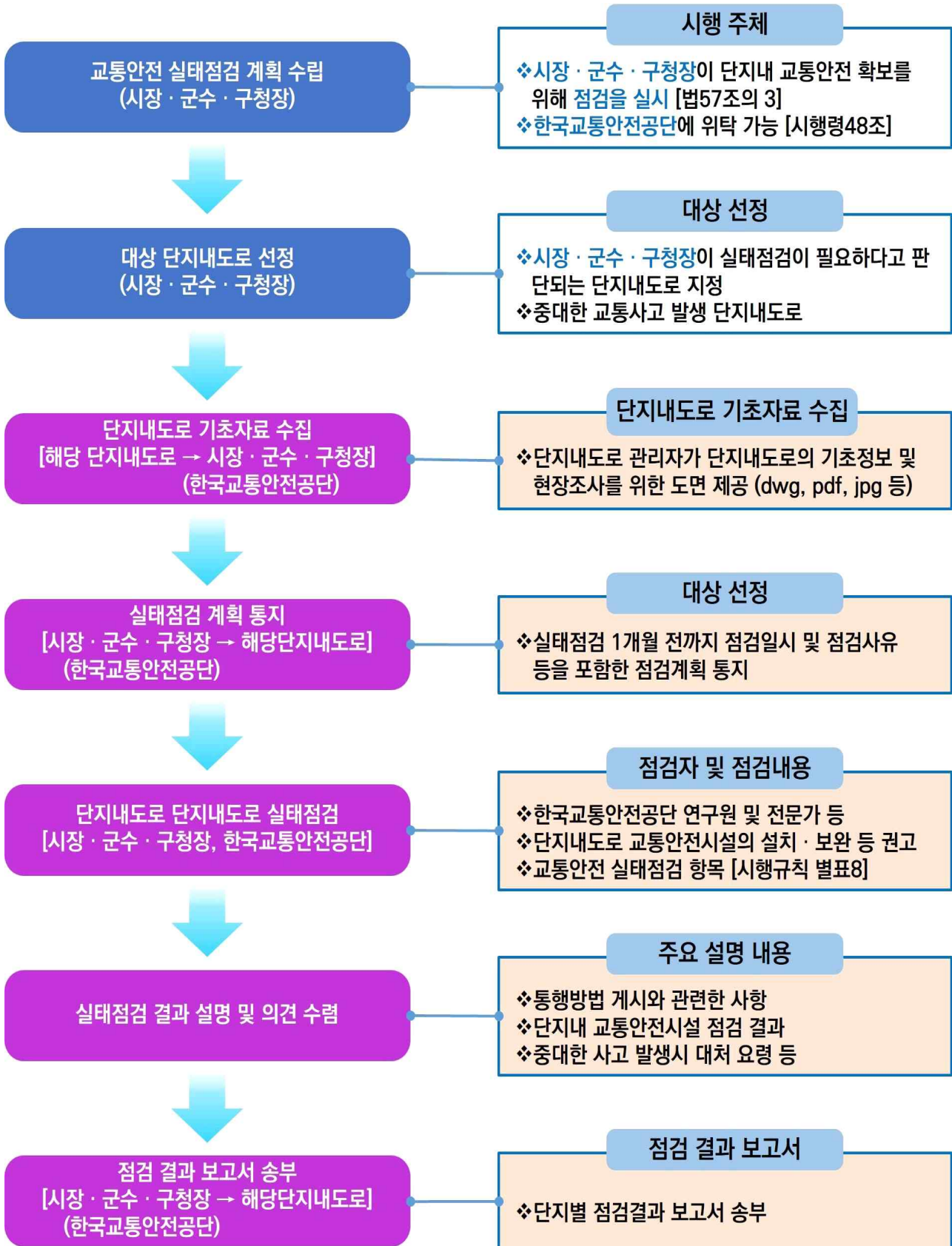
□ 단지내 도로(교통안전법 제57조의 3)

- (정의) 단지내도로란 「공공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 함
- (단지내도로 안전관리) 단지내도로 설치·관리자(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사무소)에게 단지내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
 - ① 자동차의 통행 방법을 정하여야 함
 - ②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함 (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)
 - ③ 교통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함
 - ④ 시·군·구청장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(실태점검 결과를 개선·권고할 수 있음)
- (단지내도로 구역 추가)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 까지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법 개정('23.8.16, '24.1.23)
 - *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/통신대학·사이버대학, 기술대학 등 현황 : 349개(대학알리미 자료)
- (도로외 구역 현황)

구분	도로 외 구역	도로구역
정의	○ 도로 외에 일반인의 통행이 차단된 시설 내부에서 보행자차량의 통행로 등	○ 차도, 보도, 자전거도로, 측도,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관련법	○ 관련 규정 미흡 (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구역)	○ 도로교통법 적용
종류	○ 공동주택내 단지 통행로, 대학교 캠퍼스, 주차장 등의 시설 내부	○ 도로법에 따른 도로(고속·일반국도, 특별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), 유료도로, 농어촌도로 등
비교	○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로 시설물설치자 관리 및 신뢰성 있는 사고통계자료 미흡	○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행정기관 지정 관리

참고 2

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추진 절차



참고 3

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·확정 절차도 비교

